

후원회연락소 (설치)·(변경)신고서

문서번호

명 칭 (약 칭)

사무소의 소재지

전 화 번 호

연 락 소

성 명

(한자 :)

생 년 월 일
(성 별)

책 임 자

주 소

전 화 번 호

연락소인 및 책임자

직 인 의 인 영

「정치자금법」 제9조제1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3조(제1항)·(제3항)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연락소 (설치를)·(변경을)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후원회 연락소 책임자 직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1. 후원회의 승인서 1부
2. 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
3. 인영서 1부
4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

- 주 1.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<별지>에 따라 작성합니다.
2. 후원회연락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연락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
3. 사무소의 소재지, 연락소책임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, 연락소인 및 책임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합니다.